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2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이병진 · 강득구 · 김 윤
김남근 · 서삼석 · 김동아
박지혜 · 윤후덕 · 윤준병
문대림 · 강선우 · 임호선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여부의”를 “여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와 임금수준, 소정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당한 채용 취소의 금지)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채용 <u>여부의</u>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u>여부</u> 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 <u>여부 등의</u> 고지) -- ----- ----- ----- <u>여부와 임금수준, 소정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u> ----- -. ----- -----.
<u><신 설></u>	<u>제10조의2(부당한 채용 취소의 금지)</u>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한 이후에는 <u>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생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구인자</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